

기안용지

분류 문서번호	도정 242-183	(전화번호 114-874)	전결규정
처리	구경장		시
사행일자	83. 6.		3
보존일자	93. 6.		
보조 사본	도시계획국장 시정비국장 시정비계장	5/5 83-6-16 고시제 310호	83. 6. 16
기안책임자	윤 추 우 (정거수)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유 선 조 부	도시안 창조	발 신	시 정 (구경장)	동 계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제 1 안)

수 선 : 내부결재
 채 목 : 등 건

1 서울시 고시 제 3호 (69. 1. 18) 로 결정된 판내 화양동 119-5호 ~ 111-124호 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요청이 있어 이를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증정시행령 제 6조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코져 합니다

(제 2 안)

고 시 안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1 제목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시 고시 제 3호 (69. 1. 18) 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1 판내 화양동 119-5호 ~ 111-124호 에 대하여 다음

같이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6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시는 성동구 도시정비과에 비리하고 권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6

서울특별시 상

가 사업의 시행처 : 성동구 화양동 119-5로 ~ 111-124로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포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로폭 8M 연장 300M

아스팔트포장 20.4a

하수도공사 (관단 D: 610mm, L: 300m)

라 사업시행처 주소정명 : 성동구 화양동 220-14가

성동구청장 이택훈

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 83. 6

준공 - 83. 9. 20

바 수용토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주 재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영세서

소재지	지주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동구 화양동 132-83	대	132	
" 119-8	"	2	
" 112-22	"	2	
" 111-214	"	3	
" 111-213	"	14	
" 111-212	"	1	
" 성동구 56-4	권리영세	134	

정동구 송정동 56-40	대	2	
" 56-41	"	1	
화양동 132-76	도로	112	
" 121-1	"	136	
" 110-36	"	173	
" 110-2	"	76	
" 132-85	대		
" 132-82	"	5	
송정동 56-42	"	12	
화양동 132-70	도로	19	
" 116-6	광도용지	7	
" 112-13	도로	392	
" 115-2	"	555	
" 111-6	"	119	
" 112-2	"	235	
" 111-110	"	635	232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의 주소명

구분	위 치	소 유 자	토지수용법 제4조 3항 관계인
토지	정동구 화양동 132-83	정동구 화양동 132-7 이상실	
	119-8	이 등 기	
	112-22	"	
	111-214	"	
	111-213	"	
	111-212	서 클 시	
	송정동 56-4	이 등 기	

2. 상기대로로 신청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고시문 서본 및 인가조건을 부하여 인가하였기
 증명한다. 근대시행에 따른 착공계를 조속채운로써 바깥이다.
 1. 인가증 서
 2. 고시문 서본 서
 3. 인가조건 서
 4. 인가도면 서

(제 4 안)

주 선: 수신취 항조
 제 목: 공 권
 1. 당시(나) 관내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
 의 결의 인가하였기 보고합니다.
 2. 부: 고시문 서본 및 도면 서
 3. 인 회: 건설부, 광안(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청(시설계획과장)

(제 5 안)

주 선: 수신취 항조
 제 목: 관(서)보 게재의뢰
 1. 여중사랑을 관(서)보 게재의뢰 하오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서)보 게재구분: 고시
 3. 관(서)보刊登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4. 발행구분: 도시계획법 제 26조
 5. 부: 고시문 서본 서
 6. 인 회: 총무처, 광안(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청(공보관)

(제 6 안)

수 선: 서울특별시청

참 조: 시 인과장

제 목: 시정적인 불인 의회

1. 다음 사항을 직인불인 의회 하의 불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처 관보게재용 1건

나. 건설부 광관보고용 1건

다. 인가증 1건

첨 부: 24호 사본 1부

(제 7 안)

수 선: 수선처장조

발신: 과장

제 목: 등 건

영구 관내 화양동 11-1로 ~ 11-11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하연기 통보하에 영구 11-1로에 대하여

바랍니다.

첨 부: 24호 사본 1부 끝

수 선처: 총무처, 기획감사과, 사무 ~~1~~ 재무처, 건축과, 주택과

수도공사의, 건설관리과 (장)

인 가 증

1. 사업의 시행의 : 서울구 차양동 11-1호 ~ 11-124호

2. 사업의 종류 및 목적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포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폭 8m, 연장 200m

아스팔트 포장 20.4m²

하수도공사 (폭 1.0m, L=200m)

4.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구 차양동 11-1호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 83. 6.

준공 - 83. 7. 20

6. 허가 번호 : 서울시 고시 제 3호

7. 수용 또는 사용권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력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에
변경 생략

8.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변경 생략

위와 같이 변경조항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함

1983. 6.

서울특별시청

하 가 조 건

=====

1. 본 사업은 사업 신청서의 설계도서 및 일반 토목 시행서에 의거 시행
하되 다음 조건을 특히 준수함은 물론 동시 계획법에 정하는 절차나 명
령 또는 이에 관한 처분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의 공사 착공시에는 공사 감독 ~~상~~ 관할 구청에 착공 계획을 제출
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준공 계획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집행에 있어 토사 유출, 낙반 등으로 인접지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
착수전에 미리 방지책을 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제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시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4. 본 지역에 임목 벌채허가, 시방 지정지 해제 및 발파 허가등을 요할시
에는 별도 허가를 득한후 착공할 수 있고,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이 있을시에는 이를 득하여야 한다.
- ~~5. 건축물, 건축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를 득한후 건축 시행~~ ~~모~~ ~~록~~ ~~하~~ ~~여~~ ~~야~~
~~한다.~~
6. 본 사업 집행의 착수 및 준공에 있어서도 별도로 지적법 제20조 규정
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준공 검사시에는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고 지적첩회에서 측량한 경계 감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7. 하수도 시설은 하수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본 하수유입
유출로 인하여 사유 재산에 피해가 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책임지
고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 부지 주민의 하수
배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역 일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8. 하수도 구조물은 당시 하수 표준도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하수도 관도 총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9. 절개지에는 때붙임 및 식수 누락 단장하여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는 건설업 면허 소지자라야 한다.
(공사 시공 감독의 포목 건설업 면허증 사본 및 사진, 이력서, 주민등록 초본을 착공제와 동시 제출하여야 함)
11. 이공사는 죽도에 중단 또는 미시공하거나 변경 시공하는 등 적당한 이유없이 공사 기간의 연장, 기약 허가조건과 행정 지시에 불응함시는 관계업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2. 이 허가조건과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시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3. 사업시행자는 본 공사의 감독자를 지정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착오없이 공사를 시행하되 설계 변경등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각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4. 위 조건은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것이며, 도시계획법 제 78조 규정에 의거 조치하는 동시 당시의 지시에 따라 자비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끝.